

2017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I. 추경예산개요

1. 세 입

-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액은 증감없이 75억 8천 3백만원과 같음.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합 계	7,583	7,583	0	0
시 세	-	-	-	-
세외 수입	경상적	948	948	-
	임시적	1,058	1,058	-
지방교부세	87	87	-	-
보조금	1,808	1,808	-	-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	3,682	3,682	-	-

2. 세 출

-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3조 2,986억 2천 3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2조 8,750억 8천 5백만원 대비 14.7% 증액(4,235억원)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총 계	2,875,085	3,298,623	423,538	14.7%	
행정 관리	소 계	230,660	230,660	-	-
	행정운영경비	116,925	116,925	-	-
	재무활동	29	29	-	-
	사업비	113,706	113,706	-	-
교 부 금	2,644,425	3,067,963	423,538	16.0%	

-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조정교부금' 기정예산 2조 6,444억 2천 5백만원 대비 4,235억 3천 8백만원(16.0% 증)을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별	2017 예산		2017예산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7월 현재)		증감	비율
합 계	2,644,425	2,644,425	3,067,963	423,538	16.0%
조정교부금	2,644,425	2,644,425	3,067,963	423,538	16.0%

Ⅱ . 검토의견

가. 조정교부금

-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조정교부금”을 기정 예산(2조 6,444억 2천 5백만원) 대비 4,235억원 3천 8백만원 (16.0%)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소요예산(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조정교부금	3,067,963,408	2,644,425,877	423,537,5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조정교부금 증가액 423,537,531 - '16년도 결산차액 465,126,925 - '10년도 초과교부금 일부 정산(최종) △41,589,394

- 2016년도 조정교부금 결산차액은 4,651억원 규모이나, 2010년도 자치구 초과교부금(1,194억원) 정산 차액 잔여분 전부(416억원)를 금번에 조정(상계)하여 총 4,235억원을 증액하려는 것임.

〈 최근 7년간 조정교부금 정산 내역 〉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액 (A)	결산액 (B)	결산차액 (B-A)	비 고
'10년도	16,043	14,849	△1,1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16년에 걸쳐 778억원 정산 ◦ 정산 잔액 △416억원
'11년도	15,393	17,267	1,8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년 추경 전액 정산 (12년 보통세 감액분 △2,000억원과 전액 상계)
'12년도	16,846	16,931	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년 본예산 전액 정산 (10년 초과교부금과 85억원 상계)
'13년도	18,330	18,711	3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본예산 전액 정산
'14년도	19,763	20,370	6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추경 전액 정산 (10년 초과교부금과 277억원 상계)
'15년도	22,213	25,585	3,3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추경 전액 정산 (10년 초과교부금과 416억원 상계)
'16년도	23,915	28,566	4,6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추경 전액 정산 (10년 초과교부금 잔액 416억원 상계)

〈2010년 초과교부금 자치구별 정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10년 초과교부	1차 상계처리		2차 상계처리		3차 상계처리		4차 상계처리	
		잔액	12년 결산	잔액	14년 결산	잔액	15년 결산	잔액	16년 결산
조정교부금	△119,359	△110,858	8,501	△83,179	27,679	△41,589	41,589	-	41,589
일반교부금	△107,369	△99,718	7,651	△73,896	24,911	△37,403	37,403	-	37,403
종로구	-	-	-	-	-	-	-	-	-
중 구	-	-	-	-	-	-	-	-	-
용산구	△7,883	△7,326	557	△5,446	1,880	△2,723	2,723	-	2,723
성동구	△2,772	△2,576	196	△1,915	661	△958	958	-	958
광진구	△9,661	△8,978	683	△6,674	2,304	△3,337	3,337	-	3,337
동대문	△1,751	△1,628	124	△1,210	418	△605	605	-	605
중랑구	△4,312	△4,007	305	△2,979	1,028	△1,489	1,489	-	1,489
성북구	△5,634	△5,236	398	△3,892	1,343	△1,946	1,946	-	1,946
강북구	826	826	-	-	△826	-	-	-	-
도봉구	△4,679	△4,348	331	△3,232	1,116	△1,616	1,616	-	1,616
노원구	△5,523	△5,132	390	△3,815	1,317	△1,908	1,908	-	1,908
은평구	△155	△144	11	△107	37	△54	54	-	54
서대문	△8,193	△7,614	579	△5,660	1,954	△2,830	2,830	-	2,830
마포구	△6,823	△6,341	482	△4,714	1,627	△2,357	2,357	-	2,357
양천구	△10,625	△9,875	751	△7,341	2,534	△3,670	3,670	-	3,670
강서구	△2,062	△1,916	146	△1,425	492	△712	712	-	712
구로구	△6,147	△5,712	434	△4,247	1,466	△2,123	2,123	-	2,123
금천구	△4,949	△4,599	350	△3,419	1,180	△1,710	1,710	-	1,710
영등포	△11,512	△10,698	813	△7,953	2,745	△3,976	3,976	-	3,976
동작구	△6,045	△5,617	427	△4,176	1,441	△2,088	2,088	-	2,088
관악구	86	86	-	-	△86	-	-	-	-
서초구	-	-	-	-	-	-	-	-	-
강남구	-	-	-	-	-	-	-	-	-
송파구	△3,181	△2,956	225	△2,197	759	△1,099	1,099	-	1,099
강동구	△6,375	△5,925	450	△4,404	1,520	△2,202	2,202	-	2,202
특별교부금	△11,990	△11,140	850	△8,372	2,768	△4,186	4,186	-	4,186

〈추경 편성 전후 자치구별 교부액 비교표〉

(단위 : 억원)

구 분	2017년 당초예산	2017년 추경액	증가액
조정교부금	26,444	30,679	4,235
일반교부금	23,800	27,612	3,812
종 로 구	464	549	85
중 구	149	177	28
용 산 구	510	570	60
성 동 구	839	973	133
광 진 구	1,052	1,210	157
동 대 문 구	1,115	1,298	183
중 량 구	1,313	1,529	216
성 북 구	1,501	1,745	244
강 북 구	1,264	1,490	227
도 봉 구	1,287	1,503	215
노 원 구	1,912	2,237	325
은 평 구	1,387	1,625	239
서 대 문 구	1,062	1,225	163
마 포 구	782	900	118
양 천 구	1,174	1,349	175
강 서 구	1,319	1,541	222
구 로 구	1,231	1,422	191
금 천 구	836	962	126
영 등 포 구	655	728	73
동 작 구	989	1,138	149
관 악 구	1,367	1,604	238
서 초 구	83	97	15
강 남 구	-	-	-
송 파 구	476	549	73
강 동 구	1,033	1,190	157
특별교부금	2,644	3,067	423

- 2017년 “조정교부금”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해 초과교부액 정산 및 현 자치구 재정난 해소 여부와 연계하여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르면, 보통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조정교부금의 차액은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10년도 초과교부금에 대한 정산분을 7년이 경과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는 것이 동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예산계상) ① 시장은 매년 이 조례에 따른 조정교부금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통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조정교부금의 차액은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나. 특별지방교부세 간주처리

- 행정국은 “도로명 주소 홍보 및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위해 8천 7백만원(지방교부세)을 간주처리(6월 28일)하였음.
- 동 특별교부세는 지하철·경전철 역사 출구에 도로명 안내시설물 제작 및 설치를 위해 2017년 4월 28일에 행정자치부에서 시책수요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예산으로, 예산 총칙 제10조¹⁾에 의하여 간주처리(6월 28일)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1) 예산총칙 제10조 2017년도에 한하여 연도 중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즉시 보고한다.

있는바, 추가경정예산 편성 인접 시점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산을 간주처리한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다. 집행실적 저조 사업에 대한 검토

- 2017회계연도 행정국 소관의 각 사업별 예산집행현황(2017. 6. 30 기준) 중 현재 80% 이상 미집행되어 집행률이 저조한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들에 대한 집행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및 감액 조정 필요성에 대한 점검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특히, 주민참여예산사업(은평구 새주소 미니 안내도 설치 사업, 노원구 북한이탈주민 통일축제 한마당 개최)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 추진”의 ‘연구용역비’, “정보소통광장 서비스 고도화 사업”의 ‘공공운영비’, “문서공개시스템 기능 확대” 사업의 ‘사무관리비’, “문서공개시스템 기능 확대” 사업의 ‘공공운영비’, “시청사 내진보강” 사업의 ‘시설비’ 등의 경우는 예산 집행실적이 전무한바, 행정국은 당해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직원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한 예산과 직원 근무 환경 개선사업 등의 경우도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한바, 행정국은 연말 몰아치기식 부실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목적에 맞는 예산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행정국 80%이상 미집행사업 현황(2017. 6. 30 기준)〉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행정장비구매(자산및물품취득비)	1,192,366	215,409	976,957	81.9%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시설비)	1,371,717	85,312	1,286,405	93.8%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시설 개·보수(시설비)	379,365	44,180	335,185	88.4%
청사 녹지대 및 수목관리(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35,729	23,205	112,524	82.9%
청사 녹지대 및 수목관리(시설비)	95,000	0	95,000	100.0%
시청사 청소관리(사무관리비)	243,072	37,969	205,103	84.4%
시청사 내진보강(시설비)	555,273	0	555,273	100.0%
정년·명예퇴직자 격려(행사운영비)	173,068	183	172,885	99.9%
정년·명예퇴직자 격려(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00	366	3,234	89.8%
정년·명예퇴직자 격려(포상금)	298,180	14,500	283,680	95.1%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운영(자산및물품취득비)	50,000	3,260	46,740	93.5%
인사전산시스템 운영(공공운영비)	74,557	2,310	72,247	96.9%
공무직 노사관리(사무관리비)	139,350	22,922	116,428	83.6%
공무직 노사관리(공공운영비)	17,810	0	17,810	100.0%
장기국외훈련(사무관리비)	39,000	4,853	34,147	87.6%
직장교육활성화(사무관리비)	648,150	112,706	535,444	82.6%
명사초청 특강 운영(사무관리비)	18,900	0	18,900	100.0%
시장과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 운영(사무관리비)	25,000	4,434	20,566	82.3%
직원후생복지지원(국내여비)	26,000	0	26,000	100.0%
직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포상금)	10,000	0	10,000	100.0%
직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자산및물품취득비)	34,000	0	34,000	100.0%
직원 근무환경 개선사업 추진(자산및물품취득비)	110,000	0	110,000	100.0%
직원격려프로그램 운영(기타보상금)	40,000	0	40,000	100.0%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사업(자치구기타재원조정비)	8,000,000	0	8,000,000	100.0%
자치회관 운영비 지원 및 활성화(사무관리비)	126,800	24,375	102,425	80.8%
자치회관 운영비 지원 및 활성화(자치단체경상보조금)	2,239,033	292,000	1,947,033	87.0%
시·자치구간 소통·통합 협력체계 강화(행사운영비)	10,900	0	10,900	100.0%
도로명주소 홍보 및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등(사무관리비)	137,909	7,092	130,817	94.9%
은평구 새주소 미니 안내도 설치 사업(주민참여) (자치단체자본보조)	30,000	0	30,000	100.0%
노원구 북한이탈주민 통일축제 한마당 개최(주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2,000	0	22,000	100.0%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무관리비)	10,200	0	10,200	100.0%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사무관리비)	12,000	339	11,661	97.2%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 강화-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국비)(사무관리비)	33,000	0	33,000	100.0%
시민 시상제도 운영(사무관리비)	96,490	5,259	91,231	94.5%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운영사무관리비)	8,600	1,230	7,370	85.7%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운영행사실비보상금)	16,000	2,728	13,272	82.9%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 추진(사무관리비)	1,219,100	64,076	1,155,024	94.7%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 추진(연구용역비)	90,000	0	90,000	100.0%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기타부담금)	3,217,766	0	3,217,766	100.0%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500,000	67,400	432,600	86.5%
정보소통광장 서비스 고도화(공공운영비)	52,057	0	52,057	100.0%
문서공개시스템 기능 확대(사무관리비)	3,000	0	3,000	100.0%
문서공개시스템 기능 확대(공공운영비)	98,245	0	98,245	100.0%
정보공개제도 운영·관리(사무관리비)	100,740	19,392	81,348	80.8%
기록정보관리(사무관리비)	1,249,790	132,482	1,117,308	89.4%
기록정보관리(공공운영비)	388,522	72,131	316,391	81.4%
기록정보관리(전산개발비)	221,295	0	221,295	100.0%
수련원 유지 및 관리(시설비)	330,000	18,960	311,040	94.3%

전문위원 : 김태한

입법조사관 : 신정희